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633호

2008년 4월 21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 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2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25호 공시송달공고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29호 손실보상계획공고 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2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4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2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7호 인천광역시서구 환경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8호 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 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4.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존	소로	3	1	6.0	국지 도로	721.0	중1-57 석남동 322-12	중1-57 석남동 329-1	일반 도로	인고866호 2006.6.5	
변경	소로	3	1	6.0	국지 도로	721.0	중1-57 석남3동 322-12	중1-57 석남3동 329-1	일반 도로		일부구간선 형변경
기존	소로	3	5	6.0	국지 도로	72.0	소3-1 석남동 산23-11	소3-1 석남동 산17-2	일반 도로	인고866호 2006.6.5	
변경	소로	3	5	6.0	국지 도로	72.0	소3-1 석남3동 322-47	소3-1 석남3동 17-2	일반 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 변경 사유서

구 분	도 로 명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3-1호선 (국지도로)	L = 721.0m B = 6.0m	기 결정된 노선의 일부 계획선이 기존의 옹벽선을 침범하여 공사시 과도한 사업비 부담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옹벽선에 맞추어 변경코자함.
변경	소로3-5호선 (국지도로)	L = 72.0m B = 6.0m	기 계획상 소로3-1호선과 본 호선의 접속부분의 동선이 매우 불량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과 교통흐름에 불편이 예상되어 도시계획선의 변경으로 민원발생 최소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

2.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2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1항에 의하여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 기 간 : 2008년 4월 19일 ~ 5월 8일
 -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민원실내)
 -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 기 간 : 2008년 4월 19일 ~ 5월 8일
 -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 제출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4.16 ~ 2008.5.1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박재운외 5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 당 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8년 5월 1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 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박재운	인천시 서구 석남동 543-23 (2/4) 조은그린빌 302호	인천33모 2772	철재범퍼가드설치	제29조제1항	
2	송경희	인천시 서구 왕길동 646-2 (51/4) 보성마이원 302	인천83다 6251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3	김종복	인천시 서구 신현동 112-49 (35/2)	인천80나 7093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4	박상만	인천시 서구 석남동 183-28 (6/3)	08누7170	후등화렌즈 착색	제29조제1항	
5	신안목재 (주)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78-63	인천1노 7251	전번호판 탈색,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제10조제5항	
6	최낙선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4블록 1,2롯데 신안실크밸리아파트512동 1302호	인천3도 7439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29호

손실 보상 계획 공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원창동 동일폐차장부근(중1-53호선)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원창동 동일폐차장부근 (중1-53호선)도로개설공사	2008. 01. ~ 2010.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36-33번지 일원	L= 525m B = 20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예산의범위내에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08. 04. 15. ~ 2008. 04. 29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7)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1-9, 31-11, 31-10, 31-12, 132-21, 132-36, 132-29, 132-32, 132-23, 132-31, 205-3, 129-18, 129-16, 129-17, 129, 129-13, 132-30, 132-26, 132-5, 132-7, 132-35, 129-14, 129-3, 129-9, 160-1, 129-15, 132-33, 131-2, 131-4, 132-34, 132-37, 131-5, 130-5, 130-7, 154-4, 154-1, 154-8, 154-2, 154-3, 154-10, 155-9, 153-1, 산46-4, 152-25, 152-23, 산46-3, 산45-1, 152-19, 152-22, 산 44-1, 152-21, 150-3, 144-1, 143-14, 408-3

- 지장물 : 위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전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원창동	31-2	도	925.0	28.0	28.0		897.0	국	인천광역시			
1	변경	원창동							-					
1-1	당초	원창동							-					
1-1	변경	원창동	31-9	도	33.0	33.0	33.0		-	국	인천광역시			
2	당초	원창동	31-5	임	149.0	94.0	94.0		55.0	국	신원정			
2	변경	원창동							-					
2-1	당초	원창동							-					
2-1	변경	원창동	31-11	임	94.0	94.0	94.0		-	국	신원정			
2-2	당초	원창동							-					
2-2	변경	원창동	31-10	임	4.0	4.0	4.0		-	국	신원정			
3	당초	원창동	31-7	도	463.0	179.0	176.0	3.0	284.0	국	건설교통부			
3	변경	원창동							-					
3-1	당초	원창동							-					
3-1	변경	원창동	31-12	도	185.0	185.0	185.0		-	국	건설교통부			
4	당초	원창동	132-21	도	262.0	262.0	262.0		-	국	인천광역시			
4	변경	원창동	132-21	도	262.0	262.0	262.0		-	국	인천광역시			
5	당초	원창동	132-22	임	72.0	3.0		3.0	69.0	박학원	남구 학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5	변경	원창동							-					
5-1	당초	원창동							-					
5-1	변경	원창동	132-36	임	5.0	5.0	5.0		-	박학원	남구 학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6	당초	원창동	132-29	임	10.0	10.0	3.0	7.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6	변경	원창동	132-29	임	10.0	10.0	10.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7	당초	원창동	132-6	도	28.0	12.0	4.0	8.0	16.0	박학원	남구 학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7	변경	원창동							-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전여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관리내용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7-1	당초	원창동							-						
7-1	변경	원창동	132-32	도	12.0	12.0	12.0		-	박학원	남구 학인동 645 신동아아파트4층 905호				
8	당초	원창동	132-23	도	12.0	12.0	12.0		-	국	인천광역시				
8	변경	원창동	132-23	도	12.0	12.0	12.0		-	국	인천광역시				
9	당초	원창동	132-3	임	125.0	40.0	40.0		85.0	기진산업 주식회사	남동구 고전동 726-7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남동강단지 점)	근저당	
9	변경	원창동							-						
9-1	당초	원창동							-						
9-1	변경	원창동	132-31	임	37.0	37.0	37.0		-	기진산업 주식회사	남구 고전동 726-7				
10	당초	원창동	205-1	도	945.0	239.0	228.0	11.0	706.0	국	건설교통부				
10	변경	원창동							-						
10-1	당초	원창동							-						
10-1	변경	원창동	205-3	도	242.0	242.0	242.0		-	국	건설교통부				
11	당초	원창동	129-12	진	52.0	45.0	8.0	37.0	7.0	정의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1-57				
11	변경	원창동							-						
11-1	당초	원창동							-						
11-1	변경	원창동	129-18	진	43.0	43.0	43.0		-	정의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1-57				
12	당초	원창동	129-11	도	337.0	47.0	19.0	28.0	29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2	변경	원창동							-						
12-1	당초	원창동							-						
12-1	변경	원창동	129-16	도	36.0	36.0	36.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12-2	당초	원창동							-						
12-2	변경	원창동	129-17	도	8.0	8.0	8.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13	당초	원창동	129	도	60.0	60.0	59.0	1.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광동아파트 7층 206호				
13	변경	원창동	129	도	60.0	60.0	60.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광동아파트 7층 206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장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전여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자	관리내용	비고
						계	도로내	도외		소유자	주소					
14	당초	원장동	129-6	전	117.0	60.0	5.0	55.0	57.0	박희원 외1인	남구 확인동 645 신동아아파트 46동 905호					
14	변경	원장동							-							
14-1	당초	원장동							-							
14-1	변경	원장동	129-13	전	56.0	56.0	56.0		-	박희원 외1인	남구 확인동 645 신동아아파트 46동 905호					
15	당초	원장동	132-1	대	491.0	68.0	10.0	58.0	423.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5	변경	원장동							-							
15-1	당초	원장동							-							
15-1	변경	원장동	132-30	대	77.0	77.0	77.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6	당초	원장동	132-26	대	474.0	474.0	474.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6	변경	원장동	132-26	대	474.0	474.0	474.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7	당초	원장동	132-5	도	66.0	66.0	66.0		-	박지원	남구 죽안동 1250 생동아파트 7동 206호					
17	변경	원장동	132-5	도	66.0	66.0	66.0		-	박지원	남구 죽안동 1250 생동아파트 7동 206호					
18	당초	원장동	132-7	도	7.0	7.0	7.0		-	박지원	남구 죽안동 1250 생동아파트 7동 206호					
18	변경	원장동	132-7	도	7.0	7.0	7.0		-	박지원	남구 죽안동 1250 생동아파트 7동 206호					
19	당초	원장동	132-20	전	869.0	507.0	470.0	37.0	362.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9	변경	원장동							-							
19-1	당초	원장동							-							
19-1	변경	원장동	132-35	전	511.0	511.0	511.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0	당초	원장동	129-7	대	714.0	25.0	12.0	13.0	689.0	박기준	남동구 만수동 924-1					
20	변경	원장동							-							
20-1	당초	원장동							-							
20-1	변경	원장동	129-14	대	20.0	20.0	20.0		-	박기준	남동구 만수동 924-1					
21	당초	원장동	129-3	도	22.0	22.0	22.0		-	박종선 외1인	132-1	인천세무서			임학	
21	변경	원장동	129-3	도	22.0	22.0	22.0		-	박종선 외1인	132-1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전여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22	당초	원창동	129-9	도	4.0	4.0	4.0		-	박용섭 외1인	132-1				
22	변경	원창동	129-9	도	4.0	4.0	4.0		-	박용섭 외1인	132-1				
23	당초	원창동	160-1	도	2,552.0	4.0	4.0		2,548.0	국	인천광역시 서구				
23	변경	원창동	160-1	도	2,552.0	4.0	4.0		2,548.0	국	인천광역시 서구				
23-1	당초	원창동							-						
23-1	변경	원창동	129-15	장	1.0	1.0	1.0		-	에스케이 인천장유	129-8				
24	당초	원창동	132-17	진	512.0	6.0		6.0	506.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4	변경	원창동							-						
24-1	당초	원창동							-						
24-1	변경	원창동	132-33	진	5.0	5.0	5.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5	당초	원창동	131-2	도	11.0	11.0	11.0		-	최용복	석남동 353-4				
25	변경	원창동	131-2	도	11.0	11.0	11.0		-	최용복	석남동 353-4				
26	당초	원창동	131-4	도	2.0	2.0	2.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26	변경	원창동	131-4	도	2.0	2.0	2.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27	당초	원창동	132-18	진	827.0	253.0	193.0	60.0	574.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7	변경	원창동							-						
27-1	당초	원창동							-						
27-1	변경	원창동	132-34	진	257.0	257.0	257.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8	당초	원창동	132-24	진	223.0	35.0		35.0	188.0	이정용 외1인	인천 서구 신현동 200-6 원흥아파트1 동 708호				
28	변경	원창동							-						
28-1	당초	원창동							-						
28-1	변경	원창동	132-37	진	34.0	34.0	34.0		-	이정용 외1인	인천 서구 신현동 200-6 원흥아파트1 동 708호				
29	당초	원창동	131-1	대	648.0	634.0	548.0	86.0	14.0	최용복	석남동 353-4				
29	변경	원창동							-						

편입용지 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주소				
29-1	당초	원창동							-							
29-1	변경	원창동	131-5	대	635.0	635.0	635.0		-	최용복	석남동 353-4					
30	당초	원창동	130-1	전	544.0	465.0	352.0	113.0	79.0	최용복	석남동 353-4					
30	변경	원창동							-							
30-1	당초	원창동							-							
30-1	변경	원창동	130-5	전	473.0	473.0	473.0		-	최용복	석남동 353-4					
31	당초	원창동	130-3	전	332.0	195.0	103.0	92.0	137.0	도신기	130-3	인천광역시 서구			임류	
31	변경	원창동							-							
31-1	당초	원창동							-							
31-1	변경	원창동	130-7	전	191.0	191.0	191.0		-	도신기	130-3					
32	당초	원창동	154-4	대	388.0	234.0	135.0	99.0	154.0	김간수	155					
32	변경	원창동	154-4	대	388.0	234.0	234.0		154.0	김간수	155					
33	당초	원창동	154-1	전	220.0	104.0	8.0	96.0	116.0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민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지상권, 근저당	
33	변경	원창동	154-1	전	109.0	109.0	109.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민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지상권, 근저당	
34	당초	원창동	154-8	전	263.0	263.0	263.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민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5	지상권, 근저당	
34	변경	원창동	154-8	전	263.0	263.0	263.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민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5	지상권, 근저당	
35	당초	원창동	154-2	전	60.0	60.0	60.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민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6	지상권, 근저당	
35	변경	원창동	154-2	전	60.0	60.0	60.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민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6	지상권, 근저당	
36	당초	원창동	154-3	대	304.0	282.0	230.0	52.0	22.0	김영득	155	근해인강영수산업협동조합 정도간	인천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선) 인천시 남구 죽안동 61-21	인천시 남구 죽안동 61-21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36	변경	원창동	154-3	대	304.0	282.0	282.0		22.0	김영득	155	근해인강영수산업협동조합 정도간	인천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선) 정도간	인천시 남구 죽안동 61-21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37	당초	원창동	154-5	전	243.0	17.0		17.0	226.0	김진식	154					
37	변경	원창동							-							
37-1	당초	원창동							-							
37-1	변경	원창동	154-10	전	15.0	15.0	15.0		-	김진식	154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환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주소	주 소	
38	당초	환창동	155-1	대	512.0	440.0	367.0	73.0	72.0	김명득	155	근해안강마을수산협동조합 정도강	주 소 강서구 화곡동 1105-4(구 화동남지분) 인천시 남구 주안동 61-21	권리내용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38	변경	환창동							-						
38-1	당초	환창동							-						
38-1	변경	환창동	155-9	대	433.0	433.0	433.0		-	김명득	155				
39	당초	환창동	153-3	전	1,025.0	90.0	60.0	30.0	935.0	서정안	서울 강북 미아 1354 복산라이브파크 아파트 108-1201				
39	변경	환창동	153-1	전	1,025.0	90.0	90.0		935.0	서정안	서울 강북 미아 1354 복산라이브파크 아파트 108-1201				
40	당초	환창동	산46-1	임	595.0	29.0	6.0	23.0	566.0	안혜석 외 1인	동구 송림동 30	인천광역시 서구		인용채 지분임류	
40	변경	환창동							-						
40-1	당초	환창동							-						
40-1	변경	환창동	산46-4	임	13.0	13.0	13.0		-	안혜석 외 1인	동구 송림동 30				
41	당초	환창동	152-14	전	1,217.0	600.0	452.0	148.0	617.0	최용복	152				
41	변경	환창동							-						
41-1	당초	환창동							-						
41-1	변경	환창동	152-25	전	601.0	601.0	601.0		-	최용복	152				
42	당초	환창동	152-11	전	3,494.0	669.0	470.0	199.0	2,825.0	김생근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타운스빌아파트 114-302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새마을금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206	임류 근저당, 지상권	
42	변경	환창동							-						
42-1	당초	환창동							-						
42-1	변경	환창동	152-23	전	643.0	643.0	643.0		-	김생근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타운스빌아파트 114-302				
43	당초	환창동	산46-3	임	298.0	2.0	2.0	2.0	296.0	박석희	인천 부평구 석정동 351-3 우남빌라-106	환창동업협동조합	상주시 함창읍 구월리 142-4	근저당	
43	변경	환창동	산46-3	임	298.0	2.0	2.0		296.0	박석희	인천 부평구 석정동 351-3 우남빌라-106	환창동업협동조합	상주시 함창읍 구월리 142-4	근저당	
44	당초	환창동	산45	임	8,926.0	2,422.0	1,683.0	739.0	6,504.0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리움하우스 2-30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기입류	
44	변경	환창동							-						
44-1	당초	환창동							-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4-1	변경	원창동	신45-1	임	2,610.0	2,610.0	2,610.0		-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재무스 2-302				
45	당초	원창동	152-2	전	1,088.0	635.0	504.0	131.0	453.0	장길수	동구 송림동 59-48				
45	변경	원창동							-						
45-1	당초	원창동							-						
45-1	변경	원창동	152-19	전	630.0	630.0	630.0		-	장길수	동구 송림동 59-48				
46	당초	원창동	152-8	전	1,792.0	934.0	726.0	208.0	858.0	심경섭	백석동 6	서민산농업협동조합(겸임지점)	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4	근저당, 지상권	
46	변경	원창동							-						
46-1	당초	원창동							-						
46-1	변경	원창동	152-22	전	905.0	905.0	905.0		-	심경섭	백석동 6				
47	당초	원창동	신44	임	893.0	25.0		25.0	868.0	장길수	석남동 364				
47	변경	원창동							-						
47-1	당초	원창동							-						
47-1	변경	원창동	신44-1	임	76.0	76.0	76.0		-	장길수	석남동 364				
48	당초	원창동	152-7	전	3,501.0	809.0	717.0	92.0	2,692.0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재무스 2-30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기입류	
48	변경	원창동							-						
48-1	당초	원창동							-						
48-1	변경	원창동	152-21	전	818.0	818.0	818.0		-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재무스 2-302				
49	당초	원창동	150-1	전	2,724.0	564.0	416.0	148.0	2,160.0	김정숙	석남동 353-4				
49	변경	원창동							-						
49-1	당초	원창동							-						
49-1	변경	원창동	150-3	전	547.0	547.0	547.0		-	김정숙	석남동 353-4				
50	당초	원창동	144	전	2,073.0	40.0	29.0	11.0	2,033.0	최기환	신원동 278	서민산농업협동조합(물도지점)	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4	근저당	
50	변경	원창동							-						
50-1	당초	원창동							-						

지 장 물 집 계 표 (건물외)

조서 번호	지번	종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권리내용	
1	129-12	버스정류장	철재	1	1	식	-	-	-	
2	132-26	콘테이너	5.0x2.1	1	1	EA	황성축산	033)343-1324		
3	132-26	가옥	블록,슬라브	57.8	57.8	m2	유영환	573-0619	세입자	
		가옥	조립식	17.8	17.8	m2	"	"	"	
		가옥	블록,기와	57.1	57.1	m2	이춘례	574-0874	주	
		가옥	블록,스레트	36.2	36.2	m2	"	"	"	
		자판기	철재	1	1	EA	"	"	"	
4	132-26	가옥	블록,스레트	56.8	56.8	m2	이기원	-	주	
		가옥	스레트(지붕)	13.7	13.7	m2	"	"	"	
		간이화장실	1.2x1.2	1	1	EA	"	"	"	
5	132-1	가옥(공장)	조립식	369.8	37.0	m2	박귀용	011-309-0286	주	
		계단	철재	1	1	식	"	"	"	
		간이화장실	1.2x1.2	1	1	EA	"	"	"	
		화단		1	1	식	"	"	"	
		계근대		1	1	식	"	"	"	
		크레인		1	1	식	"	"	"	
6	129-6	가옥	블록,스레트	49.4	48.5	m2	-	-	-	
		담장	함석(h=2.5)	12.0	12.0	m	"	"	"	
		담장	목조(h=1.8)	4.6	4.6	m	"	"	"	
7	129-7	콘테이너	2.5x7.0	1	1	EA	윤상덕	576-5066	주	
		문주	0.5x0.5	2	2	EA	"	"	"	
		담장	블록(h=2.5)	24.0	17.5	m	"	"	"	
8	132-20	콘테이너	3.0x6.0	1	1	EA	문태영	572-2753	주	
		담장	함석(h=2.1)	94.0	57.0	m	"	"	"	
9	131-1	가옥	블록,스레트	165.3	165.3	m2	최인도	-	주	
		가옥	콘크리트바닥	38.5	38.5	m2	"	"	"	
		담장	블록(h=2.0)	3.8	3.8	m	"	"	"	
		수목		17	17	주	"	"	"	

조서 번호	지번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권리내용	
10	130-1	가옥	블록,스레트	50.5	50.5	m2	이춘호	011-729-4825	주	
		가옥	함석,스레트	10.4	10.4	m2	"	"	"	
		가옥	철조망,스레트	19.0	19.0	m2	"	"	"	
		담장	블록(h=1.1)	18.0	18.0	m	"	"	"	
		담장	함석(h=2.0)	37.0	37.0	m	"	"	"	
		냉동고	철재	5	5	식	"	"	"	
		콘테이너	7.4x3.0	1	1	EA	"	"	"	
		콘테이너	2.2x2.1	1	1	EA	"	"	"	
11	130-3	가옥	블록,스레트	99	25.5	m2	도선기	-	주	
		가옥	블록,기와	60.7	21.4	m2	"	"	"	
		담장	블록(h=2.0)	30.0	4.0	m	"	"	"	
		가옥	블록,스레트	176.2	145.4	m2	김복현	세진전기(584-7947)	세입자	
12	154-4	가옥	블록,스레트	159.0	58.1	m2	김갑수	572-6025	주	
		가옥	콘크리트바닥	88.4	44.0	m2	"	"	"	
		담장	블록(h=1.8)	18.0	1.0	m	"	"	"	
		문주	0.5x0.5	2	0	EA	"	"	"	
		가옥	블록,스레트	136.2	134.0	m2	이옥순	578-9288	세입자	
13	154-8	가옥	블록,스레트	235.0	235.0	m2	한택수	-	주	
14	154-5	담장	블록(h=2.0)	29.0	7.0	m	김천식	010-4747-0648	주	
15	155-1	가옥	블록,스레트	118.4	118.4	m2	김명득	572-5025	주	
		가옥	콘크리트바닥	71.8	32.2	m2	"	"	"	
		담장	블록(h=2.1)	51.0	51.0	m	"	"	"	
		가옥	블록,스레트	37.4	37.4	m2	최천성	575-8109	세입자	
		가옥	목조,스레트	8.1	8.1	m2	"	"	"	
16	153-3	가옥	블록,스레트	98.8	24.7	m2	강후진	577-2326	주	
		가옥	콘크리트바닥	35.9	0.0	m2	"	"	"	
		가옥	목조,스레트	9.2	0.0	m2	"	"	"	
		문주	0.5x0.5	2	2	EA	"	"	"	
		담장	블록(h=2.0)	1.5	0	m	"	"	"	

조서 번호	지번	종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권리내용	
17	152-14	가옥	블록,스레트	32.3	13.2	m2	-	-	-	
		가옥	목조,스레트	4.2	1.2	m2	"	"	"	
		가옥	목조,천막	11.2	11.2	m2	"	"	"	
18	152-11	가옥	블록,스레트	159.9	96.6	m2	임계홍	583-8798	주	
		가옥	목조,스레트	71.9	71.9	m2	"	"	"	
		가옥	목조,천막	8.1	7.5	m2	"	"	"	
		담장	블록(h=1.5)	11.0	11.0	m	"	"	"	
		담장	함석(h=2.5)	180.0	75.0	m	김생근	서구마전동639	토지주	
		수목	적송(h=10.0)	31	22	주	"	"	"	
19	152-2	가옥(공장)	목조,스레트	608.8	351.7	m2	백승재	승산목재(578-1334)	주	
		기계	제재기	4	4	EA	"	"	"	
20	152-8	담장	함석(h=2.3)	350.0	110.0	m	-	동일폐차(576-6633)	주	
		차량					"	"	"	
21	143-2	가옥	철재,천막	43.3	43.3	m2	-	두웅수지 (016-342-3266)	주	
		컨테이너	6.0x2.4	2	2	EA	"	"	"	
		컨테이너	6.0x3.0	1	1	EA	"	"	"	
		담장	함석(h=2.3)	100.0	65.0	m	"	"	"	
		계근대	철재(6.0x2.5)	1	1	EA	"	"	"	
		파쇄기	철재	1	1	EA	"	"	"	
		압축기	철재	1	1	EA	"	"	"	
22	144	가옥	조립식	1	1	EA	김찬심	남구상사 (011-253-2608)	주	
		컨테이너	6.3x12.0	1	1	EA	"	"	"	
		컨테이너	9.0x3.0	1	1	EA	"	"	"	
		컨테이너	5.5x3.0	1	1	EA	"	"	"	
		컨테이너	6.0x2.4	1	1	EA	"	"	"	
23	408	메쉬웬스	(h=1.8)		55.0	m	농촌 진흥공사	581-4302	주	

[illegible]

전 주 조 서

번호	종 류	측점(STA.)	위 치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한전주	STA.0+020.0	우	1	한국전력공사	
2	통신주	STA.0+020.0	우	1	한국통신	
3	한전주	STA.0+037.0	좌	1	한국전력공사	
4	한전주	STA.0+065.0	좌	1	한국전력공사	
5	통신주	STA.0+068.0	좌	1	한국통신	
6	한전주	STA.0+100.0	좌	1	한국전력공사	
7	통신주	STA.0+105.0	좌	1	한국통신	
8	통신주	STA.0+110.0	우	1	한국통신	
9	통신주	STA.0+134.0	우	1	한국통신	
10	통신주	STA.0+192.0	우	1	한국통신	
11	통신주	STA.0+230.0	우	1	한국통신	
12	한전주	STA.0+403.0	우	1	한국전력공사	
13	한전주	STA.0+430.0	좌	1	한국전력공사	
14	한전주	STA.0+450.0	좌	1	한국전력공사	
15	통신주	STA.0+527.0	우	1	한국통신	
16	한전주	STA.0+539.0	우	1	한국전력공사	
17	한전주	STA.0+678.0	좌	1	한국전력공사	
계	한전주			9		
	통신주			8		

맨 홀 조 서

번호	종 류	측점(STA.)	위 치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상수맨홀	STA.0+02.0	좌	1	상수도사업본부(인천)	
2	상수맨홀	STA.0+07.0	좌	1	상수도사업본부(인천)	
3	통신맨홀	STA.0+016.0	우	1	한국통신	
4	제수변	STA.0+020.0	우	1	상수도사업본부(인천)	
5	상수맨홀	STA.0+020.0	우	1	상수도사업본부(인천)	
6	우수맨홀	STA.0+020.0	우	1	서구청	
7	우수맨홀	STA.0+020.0	좌	1	서구청	
8	통신맨홀	STA.0+096.0	좌	1	한국통신	
9	우수맨홀	STA.0+145.0	우	1	서구청	
10	우수맨홀	STA.0+182.0	좌	1	서구청	
11	통신맨홀	STA.0+670.0	우	1	한국통신	
12	우수맨홀	STA.0+672.0	우	1	서구청	
계	상수맨홀			3		
	제수변			1		
	통신맨홀			3		
	우수맨홀			5		

기 타 지 장 물 조 서

번호	종 류	측점(STA.)	위 치	수 량	소 관 청	비 고
1	반사경	STA.0+038.0	좌	1	서구청	
2	가로등	STA.0+676.0	우	1	서구청	
3	가로등	STA.0+690.0	우	1	서구청	
4	가로등	STA.0+700.0	좌	1	서구청	
계	반사경			1		
	가로등			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사업명: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법면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1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1호선 및 소로3류4호선)
 - 【명칭】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20m, B = 6m 및 L = 90m, B = 4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7. 6월 ~ 2008.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불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불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불임과 같음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용 지 조 서

원면 번호	소재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잔여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주 소	
1	백석동	변경없음	22-9	대	578	1	0	577	인천 서구 양하동 874-1	영하지구지가 지조정사업조 상					금차시공 제외
2	백석동	변경없음	22-10	구	137	69		68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한강농지 개발조합					금차시공 제외
3	백석동	당초	22-11	대	105	13	0	92	인천 서구 양하동 874-1	영하지구지가 지조정사업조 상				가압류	금차시공 제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1413동 502호	김영호				가압류	
3	백석동	변경	22-11	대	105	13	0	92	인천 서구 양하동 874-1	영하지구지가 지조정사업조 상				가압류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1413동 502호	김영호				가압류	
4	백석동	변경	22-22	구	5		5	0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한강농지 개발조합				압류	법면 추가
5	백석동	변경없음	22-13	구	75	75		0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한강농지 개발조합				압류	
6	백석동	변경	14-11	구	3		3	0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한강농지 개발조합				가압류	법면 추가
7	백석동	변경	22-12	구	11	0	11	0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한강농지 개발조합				압류	법면 추가
8	백석동	변경없음	22-14	대	15	15	0	0	서울 양천구 신정동 282번지 27호 라 이프하이츠 빌라 기동 102호	박영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번지1호	김영균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번지 상익 아파트 6동 406호	배진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282번지 27호 라 이프하이츠 빌라 기동 102호	박영혜					
9	백석동	변경	22-23	대	74	0	74	0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번지1호	김영균					법면 추가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번지 상익 아파트 6동 406호	배진호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리관 계		
10	백석동	변경	14-10	장	126		0	한강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법면 추가
11	백석동	변경	14-8	장	98		0	한강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12	백석동	변경	19-7	답	188		0	김무용	인천 서구 백석동 22-5					
13	백석동	변경	19-11	답	214		0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법면추가
14	백석동	당초	14-7	구	802	679	0	한강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14	백석동	변경	14-7	구	802		0	한강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편입면적 변경
15	백석동	변경	14-9	구	43	0	43	한강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법면 추가
16	백석동	변경	22-25	도	2	0	0	인천광역시서 구	인천 서구 서곶길 323					법면 추가
17	백석동	당초	22-19	도	10	10	0	이춘자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					
17	백석동	변경	22-19	도	10	10	0	인천광역시서 구	인천 서구 서곶길 323					법면추가
18	백석동	변경	22-18	대	2	0	2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19	백석동	변경	22-17	대	94	94	0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20	백석동	변경	22-24	대	14	0	14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법면추가
21	백석동	변경	19-10	답	1	1	0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22	백석동	변경	19-9	답	125	125	0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23	백석동	변경	22-15	진	9	9	0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24	백석동	변경	22-20	진	6	0	6	김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법면추가
25	백석동	변경	22-16	대	2	2	0	김용민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06-206					
26	백석동	변경	22-21	대	3		0	김용민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06-206	기명은행 부침지점	장기노무전 중1동 1131- 3 동서빌딩 1층			법면 추가
27	백석동	당초	19-3	도	78	78	0	하록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2					
27	백석동	변경	19-3	도	78	78	0	인천광역시서 구	인천 서구 서곶길 323					
28	백석동	변경	14-12	구	82	0	82	한강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법면추가 금차시공제한외

영린 번호	소재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관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관리과계	
29	백석동	변경	19-12	답	169	0	169	0	김용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1	서인천농림 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1동 482-4			범여초가 금차시공제외
30	백석동	변경	19-8	답	401	401		0	김용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1	서인천농림 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1동 482-4			금차시공제외
계		당 초			1,858	1,858	0	860							
		변 경			2,735	1,981	754	952							

[illegible]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4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신고(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08. 4.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가.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나. 도로지정 내역

건축신고 위치	건 축 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도로지정 및 규모	비고
인천서구 오류동 103번지	박 용 진	오류동 103번지 도로폭 미달로 인한 도로후퇴 부분	도로너비:4.0m 도로길이:23.0m 도로면적: 6.0㎡	

다. 공고 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관할 동사무소 게시

라. 도면 열람 :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32)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7호

인천광역시서구 환경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안)

2.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제시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나.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다.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으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규제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내지 제19조)
- 라.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20조 내지 제23조)

마.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대처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환경 등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24조 내지 제25조)

※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05.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환경보전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35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 032)560-4352】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2장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시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민간단체·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자문협의회 구성) 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자문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20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거나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를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

제2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조항이 삭제 및 추가되어 상위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서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 전 화 번 호 : (032) 560-4426, FAX : (032) 560-4399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 약 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조항이 삭제 및 추가되어 상위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산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관계법령 발체	“ 해당 없음 ”
관련사업 계획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조치명령 절차 등)”을 “(조치명령 이행완료신고)”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위반행위별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출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삭제>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	5	1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5	10	30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6. 비용을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9.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3항)	50	100	300	
10. 빈용기보증금 중 미반환보증금을 법에 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에 사 용한 자(법 제22조의2제1항)	200	250	300	
1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품 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2)				
가.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 용한 자	100	200	300	
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조한 자	200	250	300	
1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이행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조치명령 및 기간			⑦ 이행완료 예정일	
⑧ 조치명령 내용				
⑨ 이행완료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 및 <u>동법시행령</u> (이하 "령" 이라 한다), <u>동법시행규칙</u> (이하 " <u>규칙</u> " 이라 한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 및 <u>같은 법 시행령</u> (이하 "령" 이라 한다), <u>같은 법 시행규칙</u> (이하 " <u>시행규칙</u> " 이라 한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7조(조치명령 절차 등)</u>	<u>제7조(조치명령 이행완료신고)</u>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준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1월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③제1항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u>시행규칙 제12조제2항</u> ----- ----- ----- -----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3. 기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삭제>
제13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제17조의 규정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견제출) ----- -----제15조----- ----- ----- ----- ----- ----- ----- -----
제15조(과태료부과기준등)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과태료부과기준등)----- -----위반행위별로----- -----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 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삭제>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 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 시한 자	<삭제>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제>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제>
7.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 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삭제>
②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만원)			비고	부과대상	부과기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u>					3. <u>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한 때(법 제10조)</u>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라. <삭제>				
마. ~ 아. (생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50	150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 8.(생략)	200	300	300		5. ~ 8. (현행과 같음)	50	100	300	
<신설>					9. <u>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반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3항)</u>	200	250	300	
<신설>					10. <u>반용기보증금 중 미반환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법 제22조의2제1항)</u>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기준 (만원)			비고	부과대상	부과기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신설>					1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품 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2) 가.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조한 자	100	200	300	
<신설>					1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신설>					1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주) 1. ~ 2. (생략)					(주)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이행기간연장신청서		☐ 제조자 또는 사업자 ☐ 일반폐기물 배출자	처리기간				
			7일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장소재지	(전 화)						
기간연장신청내역							
⑤조치명령 및 기간		⑥이행완료 예정일					
⑦조치명령 내용		⑧연장신청 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5조제5항 ☐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제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폐기 ☐ 제5조제3항 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해당사항만 제출)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2. 포장재 보유량 및 향후 사용억제계획 3. 1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억제계획 4. 1회용품의 보유량·항후 사용기간 5.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계획 6.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7. 일반폐기물배출자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일반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행완료신고서				처리기간	이행완료신고서				처리기간
				7일					7일
신 고 인	①상호(명칭)				신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⑤사업장소재지				
⑥조치명령 및 기간			⑦이행완료 예정일		⑥조치명령 및 기간			⑦이행완료 예정일	
⑧조치명령 내용		⑨이행완료 내용			⑧조치명령 내용		⑨이행완료 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15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없음